



2023년도

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

(재) 경기도민회 장학회

- 차 례 -

□ 장학회 설립 목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	1
□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예정인원, 장학금 지급기간	1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요건	1
□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	2
□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	3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	4
□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, 선발 홍보협조	5
□ 추천기관 및 신청자 유의사항	6
<표 1> 2023년도 장학생 배정기준표	7
<표 2>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일정	8
<표 3>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	9
<표 4> 장학생 선발 신청서	10
<표 4-1>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	11
<표 5> 예·체능 특기생 선발 신청서	13
<표 5-1> 예·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	14
□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및 방법	15

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

□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

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,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, 예능·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,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

□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

-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
-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
-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

□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장 학 생 (성적, 소득)				특 기 생	
		소 계	대학생	전문대생	사이버대생 방통대생	체 육	예 능
선발인원	500	450	320	100	30	26	24
지급한도액	-	-	4백만원	3백만원	6십만원	1백5십만원	1백5십만원
추천기관	-	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및 시·군민회장				경 기 도 체육회장	예총경기도 연합회장

※ 단,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, 장학생 선발 예비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장학금 지급재원 :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 및 재단 장학기금 운용수입

□ 장학금 지급 및 시기 : 1년(휴학, 퇴학,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)

※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, 장학금은 학기별로 50%씩 지급(1학기 : 5월중, 2학기 : 10월중)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

-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(기혼자는 본인)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(다자녀 신청가능,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가능)로서,
-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, 신입(편입)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

□ 장학생(성적, 소득)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

○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

성 적	• 대학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, 평균평점 B학점(B0) 이상 • 대학 신입생 :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(제2외국어는 제외), 고교 3학년 내신 성적(1, 2학기중 선택)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※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※ 예·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(예·체능 특기생은 고교생도 신청가능)
소 득 수 준	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'23년 1학기 기준) ※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(10구간)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(수급자, 차상위)에 한해서는 수급자(차상위)증명서로 확인 대체 가능

※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: ① 성적 ② 소득수준 ③ 고학년

○ 장학생(성적, 소득) 선발 평가 배점 비율

계(%)	성 적	소득수준	자원봉사	다자녀(3이상)
100	20	70	5	5

※ 장애인 가정 가점 : 5점 [장애정도 차등 배점-심한장애(1~3급) 5점, 심하지않은장애(4~6급) 3점]

■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(다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)

1.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, 교환 학생(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)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
 ※ 단,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
2. 1,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
 ※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
3. 2023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학기 (2년제 : 4학기, 4년제 : 8학기등)를 초과하거나, 2학기 복학 예정 학생
4.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
 ※ 단,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
 (경기푸른미래관 문의 ☎02)998-1003)

□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(해당 추천기관에서 수립)

○ 예·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(고교생도 신청가능)

(체육특기생)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

(예능특기생)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

☞ 예능 범위 : 사진, 국악, 음악, 무용, 미술, 문학, 연예, 연극, 건축, 영화

○ 예·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

예 능		체 육	
구분	순위 및 대회명	구분	순위 및 대회명
○ 대회주최	① 전국대회 ② 시·도대회	○대회주최	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·도대회
○ 대회규모 (훈격)	① 장관·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	○대회규모 (훈격) -전국시·도대회	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·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
○ 시상대상	① 대상(장원) ② 금상·은상(최우수,우수상) ③ 동상(특선) ④ 장려·입선·가작	○시상대상	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
○ 참가방식	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	○참가방식	① 개인전 ② 단체전
○ 기 타	-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-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-동점일 경우 상장개수	○기 타	-전년도 수상실적 필수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

단 계 별	장 학 생	특 기 생
인원 배정	- 시·군별 선발인원 배정	- 예능·체육별 선발인원 배정
접수 및 평가	- 장학회 사무처, 시·군별 신청서 접수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	-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
후보자 추천	- 배정인원의 3배수 추천	-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
선발 심사	-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	-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
심사 의결	- 재단 이사회 의결, 확정	- 재단 이사회 의결, 확정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3. 1(수) ~ 3. 10(금)

-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<표 4, 표 5>

☞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접 수 처

(장학생) :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,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·군민회 사무실(접수처 참고)

(등기우편만 접수 :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)

→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, 1102호(리더스빌딩) 우편번호 06651

(사이버·방통대생) :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(등기우편만 접수 :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)

→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, 1102호(리더스빌딩) 우편번호 06651

(예능특기생) : 예총경기도연합회 사무실(등기우편만 접수 :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)

→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, 경기문화재단 6층 우편번호 16488 ☎ 031-239-6457

(체육특기생) :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사무실(등기우편만 접수 :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)

→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, 6층 경기도체육회(선수육성팀) 우편번호 16312 ☎ 031-250-0490

※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

○ 제출기간 : 2023. 9월중

○ 제출서류

-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, 사이버·방통대생 :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
- 장학생중 예·체능 특기생 : 재학증명서

□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

- 학기중 휴학, 조기졸업,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
-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, 지자체,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

【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】

※ 관련근거

-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(중복지원의 방지)
-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(중복지원의 방지)
-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(중복지원의 방지)

□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

○ 행정기관 : 도 및 시·군 홈페이지 배너창, 도정 및 시·군정 홍보지 등

※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

○ 도·시·군민회 : 경기도민회 홈페이지, 각 시·군민회 홈페이지

○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, 한국원격대학협의회,
전국 각급 대학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배너창

○ 기 타 : 해당기관, 유관단체 홈페이지,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

□ 추천기관 및 신청자 유의사항

-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고,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(추천기관)
 - 선발신청서 작성시 **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** 확인 및 제반사항 누락 확인
 - 학자금이중지원방지 프로그램 등록시 신청학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신청학생 **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(뒷자리까지) 표기된 걸로 제출**
 -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(2020. 3. 11 ~ 현재)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고(단,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), 접수 시·군에서는 타 시·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
 - 신청 접수기간 준수(**등기우편 우체국 소인 3.10(금)에 한하여 인정**)
 -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,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 시에는 원본대조하여 제출
 -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(www.ggdm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
- ☎ 02)2055-2320, 02)2055-2322 FAX : 02)2055-2321

〈표 1〉

【 2023년도 장학생(성적, 소득) 배정기준표 】
- 시장 · 군수 , 시군민회장 추천 -

구 분		계	대학생	전문대생	사이버대생 방통대생
합 계		450	320	100	30
○ 기 본 배 정		191	99 · 31개시군×3명=93명 · 미수복3개시군×2명=6명	62명 · 31개시군×2명	30명
○ 추 가 배 정		4	4	-	-
	출연자 희망지역(안산,시흥)	4	4 · 2개시군×2명=4명	-	-
○ 별 도 배 정		2	2	-	-
	경기푸른미래관 지정기탁	2	2	-	-
○ 인 구 비 례		253	215	38	-
	인 구 수	253	215	38	-

※ 경기도 인구수 (2022. 10월말 현재) : 13,951,985명

□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◦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	2. 7(화) 10:00	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
◦ 장학생등 선발 일정등 홍보	2. 7 ~ 3. 10	경기도민회장학회 및 시·군민회, 시군청
◦ 장학생등 선발신청서 접수	3. 1 ~ 3. 10	추천기관
◦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	3. 13 ~ 3. 17	추천기관
◦ 장학생등 선발 심의	4. 20	선발심사위원회
◦ 장학생등 선발 확정	4. 27	재단이사회
◦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및 장학증서 교부	5. 1 ~ 5. 12	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 및 추천기관
◦ 장학금 지급 및 교부행사	5월중 개최예정	경기도민회장학회

※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〈표 3〉

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

시군 및 기관별	계	장 학 생				특 기 생	
		소계	대학생	전문대생	사이버대생 방통대생	체 육	예 능
계	500	420	320	100	30	26	24
수 원 시	27	27	22	5	-	-	-
고 양 시	25	25	20	5	-	-	-
용 인 시	25	25	20	5	-	-	-
성 남 시	22	22	17	5	-	-	-
부 천 시	20	20	16	4	-	-	-
안 산 시	20	20	16	4	-	-	-
화 성 시	23	23	18	5	-	-	-
남 양 주 시	18	18	14	4	-	-	-
안 양 시	16	16	12	4	-	-	-
평 택 시	16	16	12	4	-	-	-
의 정 부 시	13	13	10	3	-	-	-
파 주 시	14	14	11	3	-	-	-
시 흥 시	16	16	13	3	-	-	-
김 포 시	14	14	11	3	-	-	-
광 명 시	10	10	7	3	-	-	-
광 주 시	12	12	9	3	-	-	-
군 포 시	10	10	7	3	-	-	-
이 천 시	10	10	7	3	-	-	-
오 산 시	10	10	7	3	-	-	-
하 남 시	11	11	8	3	-	-	-
양 주 시	10	10	7	3	-	-	-
구 리 시	9	9	6	3	-	-	-
안 성 시	9	9	6	3	-	-	-
포 천 시	7	7	5	2	-	-	-
의 왕 시	7	7	5	2	-	-	-
여 주 시	7	7	5	2	-	-	-
양 평 군	7	7	5	2	-	-	-
동 두 천 시	6	6	4	2	-	-	-
과 천 시	6	6	4	2	-	-	-
가 평 군	6	6	4	2	-	-	-
연 천 군	6	6	4	2	-	-	-
개 성 시	2	2	2	-	-	-	-
개 풍 군	2	2	2	-	-	-	-
장 단 군	2	2	2	-	-	-	-
경기푸른미래관	2	2	2	-	-	-	-
사이버대·방통대	30	30	-	-	30	-	-
경기도체육회	26	-	-	-	-	26	-
예총경기도연합회	24	-	-	-	-	-	24

장학생(성적, 소득) 선발신청서

- 10 -

〈표4 - 1〉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

구 비 서 류 명		비 고					
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							
※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							
② 주민등록표 등본(학생 본인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나오게 표시)		부모기준					
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: 주민등록표 등본							
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: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							
※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(부모기준)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							
<table><tr><td>번호</td><td>주 소</td><td>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</td></tr><tr><td></td><td>경기도 ○○○○○○</td><td>2020-3-11 ○○-○○-○○</td></tr></table>			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경기도 ○○○○○○
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			
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20-3-11 ○○-○○-○○					
(최소 2020. 3. 1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)							
※주소변동일이 2020. 3.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							
③ 2023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							
-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							
※ 등록금 납부 전이면 납부 고지서 제출가능(고지서도 미 발급시 추후 제출가능)							
④ 2022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(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)							
• 대학생 및 전문대생 : 2022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 상에 평균평점 B학점 이상(복학생은 직전학기,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내신성적 성적증명서,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)							
- 4.5점 만점기준으로 3.0이상(4.3점 만점기준(2.86), 4.0점 만점기준(2.66))							

구 비 서 류 명	비 고
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‘23년 1학기 기준) ※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(10구간)으로 처리하며, 복지자격(수급자, 차상위)에 한해서는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	
⑥ 2022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(연40시간이상) →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 ○ 자원봉사 센타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○ 청소년 활동 진흥센타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○ 사회복지협의회장 (중앙, 시·도, 시·군) ※ 자원봉사(1365), 청소년(dovol), 사회복지(vms) 포털 활용 발급	학생기준
⑦ 가족관계증명서 -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(※만30세이상 형제, 자매 제외) ※ 2023년 만30세 기준 - 1993년 이전 출생자는 다자녀에 포함하지 않음	가족기준
⑧ 장애인 증명서 -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	부모 또는 학생기준

〈표 5〉

예 · 체능 특기생 선발신청서

신 청 학 생	성 명		성 별	남, 여
	연락처(휴대전화)		신청분야	예능, 체육
학 적 사 항 (2023년기준)	학교, 과(부) (학년)			
보 호 자	주 소			
	성 명			
	연락처(휴대전화)	부) 모)		
	거래통장 (본인 및 보호자)	은행명) 예금주)		
		계좌번호)		
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,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※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2023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(서명 또는 날인) (재)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				
첨부서류	※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❶,❷,❸,❹ : 필수 제출서류			

〈표5 - 1〉 예·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

구 비 서 류 명		비 고						
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								
※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								
② 주민등록표 등본		부모기준						
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: 주민등록표 등본								
•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: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								
※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(부모기준)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								
<table><tr><td>번호</td><td>주 소</td><td>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</td></tr><tr><td></td><td>경기도 ○○○○○○</td><td>2020-3-11 ○○-○○-○○</td></tr></table>		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20-3-11 ○○-○○-○○	
번호	주 소	발생일 / 신고일 변 동 사 유						
	경기도 ○○○○○○	2020-3-11 ○○-○○-○○						
(최소 2020. 3. 1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)								
※주소변동일이 2020. 3.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								
③ 예능·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								
(예능)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								
(체육)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·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								
④ 재학증명서								
-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 입증 서류								

2023년도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

□ 장학생 (운영규정 제5조) - 시장 · 군수(시 · 군민회장 추천)

◎ 평가대상 및 반영비율

합 계	성 적	소 득	자원봉사	다자녀(3이상)
100%	20%	70%	5%	5%

※ 장애인(본인, 부모) 가점 : 장애정도별 점수를 총 평가점수에 가산

장애정도	심한장애(1~3급)	심하지않은장애(4~6급)
점 수	5	3

◎ 학업성적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6조)

○ 대학 재학생 : 총장이 발행하는 2022년도 2학기(복학생은 직전학기)

성적증명서상의 평균평점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
평가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)

→ $\text{평균평점} \div (4.5 \text{ or } 4.3 \text{ or } 4.0) \times 0.2 (20\%) \times 100 = \text{평가점수}$

○ 대학 신입생 :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(단, 제2외국어는 제외) 점수나 고교
3학년 내신성적(1, 2학기중 선택) 전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$\times 0.2(20\%) =$
평가점수

◎ 소득수준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7조)

○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('23년 1학기 기준)

- ※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(10구간)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(수급자, 차상위)에 한해서는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

학자금지원구간	배점	학자금지원구간	배점
복지자격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)	70	6구간	58
1구간	68	7구간	56
2구간	66	8구간	54
3구간	64	9구간	52
4구간	62	10구간	50
5구간	60		

◎ 자원봉사활동실적 평가방법 (운영규정 제8조)

- 평가대상 : 2022년도(1월~12월)에 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
-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(중앙, 시·도, 시·군)
 - ① 자원봉사 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
 -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
 -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
- 평가방법 :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

항 목	연80시간이상	70~79시간이하	60~69시간이하	50~59시간이하	40~49시간이하
배 점	5	4	3	2	1

◎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

- 평가대상 :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

※ 만30세 이상 형제·자매 제외, 2023년 기준 1993년 이전 출생자

- 평가방법 :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

자녀수	3인	4인	5인 이상
점 수	3	4	5

(별지서식)

【 2023년도 장학생 추천 총괄표 】

□ 신청서 접수현황

합 계			대학생			전문대생		
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

□ 장학생 후보자 추천 (배정인원의 3배수)

○ 대 학 생

순 번	학교 · 학년	학 과	성 별	성 명	평 가 점 수						비 고
					계	성적	소득	봉사	다자녀	장애	

○ 전문대생

순 번	학교 · 학년	학 과	성 별	성 명	평 가 점 수						비 고
					계	성적	소득	봉사	다자녀	장애	

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.

2023. . .

추 천 인 : () 장 (인)